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민희* · 이정희** · 조연주*** · 전규안****

〈요 약〉

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6,322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인 경우, BIG4 감사인의 경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성치가 양호한 경우와 복잡성이 높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하거나 추가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연구결과는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가 많거나 초도감사이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 또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결과는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영성치가 양호할수록 적은 감사시간이 투입되고 있다는 결과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하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타당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이 복잡할수록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향후 실제감사시간에 대한 점검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이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연도효과를 알아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개별기업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실제감사시간과 비교함으로써 개별기업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표준감사시간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표준감사시간, 실제감사시간, 외부감사법, 감사보수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kminhee_@naver.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junlee@deloitte.com,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swcpa@kicpa.kr,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교신저자

I. 서 론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新)외부감사법”)로 전면개정하였다. 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감사인 직권지정의 확대,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과 연결중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감사인 선임기한의 단축,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등 기존의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획기적인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유일의 제도로서 국내외적으로 기대와 우려를 받으면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회계개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감사와 회계 실무” 항목에서 평가대상 63개국 중 2017년 63위, 2018년 62위, 2019년 61위를 차지하는 등 꼴찌에 가깝다가 2020년 46위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평가대상 64개국 중 37위로 상승하여 중위권에 도달하였다. 37위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23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꼴찌에 머물던 순위가 중위권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시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한 컨설팅 비용의 지출, 법적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¹⁾ 여러 제도 도입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을 잘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회계선진국이 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9년 2월 13일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신외부감사법에 도입된 여러 제도 중에서 감사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과 감사인이 외부감사시 실제로 투입한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9년에 제정한 표준감사시간을 이용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6,322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회계 감사시간 10% 늘어 … 중소기업 비용 부담 현실화 … 2020년 전체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 시간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 2021년 7월 14일)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인 경우, BIG4 감사인의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많거나 초도감사이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에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위험(audit risk)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와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이 적게 투입되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하거나 연도별·감사인 유형별·상장시장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앞의 연구결과는 강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 전부터 초도감사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초도감사의 경우에 그룹별로 5%~20%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당기순손실인 경우 5%~30%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경영성과의 양호 여부를 현재처럼 당기순손실 여부만으로 따지는 방안 외에 이익률 지표를 활용하여 차등화하는 방안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복잡할수록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위험계정비중에 따라 2%~30%를 가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므로 향후 실제감사시간에 대한 점검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²⁾ 넷째, 감사보수가 많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 또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감사보수 수준이나 BIG4 감사인 여부 또는 재무상태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 도입 효과를 알아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2018년)과 도입 후(2019년)를 비교하여 연도효과를 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개별기업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실제감사시간과 비교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 도입의 연도효과가 아니라 개별기업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어떤 항목에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표준감사시간을 결정할 때 기업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자산총액 대비 [매출채권(금융업의 경우 대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을 따라 2%~30%를 가산하고 있다.

신외부감사법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2항).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표본선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공헌점,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1. 이론적 배경

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1항).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2항).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제10호). 그러나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아서 감리대상이 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9년 2월 13일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 실무에서 표준감사시간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을 마련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하여, 현재 2019년과 2020년에 적용해 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준감사시간과 유사한 것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4

년까지 제정한 “업종별·자산규모별 평균감사투입시간(예시)”(이하 “평균감사투입시간”)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평균감사투입시간은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감사인들이 평균감사투입시간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신외부감사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지만 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했던 점에서 표준감사시간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동안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회계감사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람의 시간을 중시하는 표준감사시간의 제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있고, 표준감사시간의 설정 근거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특히 감사인 숙련도의 근거, 가감요인의 근거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에 대한 논란으로서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시간과 적정 감사시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물론 현재는 최소 감사시간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지만 표준감사시간이 최소 감사시간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실제감사시간이 증가하여 감사보수가 증가한 부분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이 해외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는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하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가 있으며, 실무에서도 표준감사시간으로 인한 기업부담의 증가는 문제지만 표준감사시간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도 많으므로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³⁾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3년을 맞이한 2021년에 표준감사시간제도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⁴⁾

2. 선행연구의 검토

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표준감사시간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표준감사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절에서는 과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평균감사투입시간과 신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을 이용한 논문으로 나누어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정도진 외(2020)는 현행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관련하여 표준감사시간 도출방식의 개선방안과 표준감사시간 시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 “표준감사시간제 첫 개정 … 업종·규모별 차등화 할까.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연구진을 꾸려 표준감사시간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표준감사시간제 산식 및 쟁점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골자로 오는 9~10월 즈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경제신문 2021년 7월 9일)

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을 이용한 연구

먼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업종별·자산규모별 평균감사투입시간(예시)”을 이용한 연구로는 박종성·조은주(2016), 신현걸·정수진(2017), 이민우·정기위(2020), 박종성·곽승욱(2018) 등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은 일관되게 평균감사투입시간의 제공 이후 감사시간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박종성·조은주(2016)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평균감사투입시간을 제공한 이후 감사투입시간이 더 많이 증가되었으며, BIG4와 non-BIG4간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을 발견하였다. 평균감사투입시간이 제공된 후의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실제감사투입시간이 평균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기업일수록 감사투입시간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달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의뢰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2014년에 더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박종성·조은주(2016)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과 그와 관련된 입장표명이 감사투입시간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신현걸·정수진(2017)은 2012년 이후 평균감사투입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비율(AHR)의 평균이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여 1에 근접하였고, AHR의 표준편차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평균감사투입시간에 근접하도록 감사인이 매년 실제감사시간을 조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AHR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평균감사투입시간 자료가 감사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이 과거에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고 있던 감사인에게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감사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우·정기위(2020)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피감사기업은 이후 기간 동안 실제감사시간이 증가하였으며, 감사보수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감사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표준감사투입시간의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감사보수에 따른 평균감사투입시간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에게 지급된 비감사보수가 높은 기업의 경우 평균감사투입시간 이상의 실제감사시간이 투입되더라도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이민우·정기위(2020)는 감사시장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비감사보수의 지급 등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감사환경에서는 평균감사투입시간제도의 효과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종성·곽승욱(2018)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한 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한 기간(2015년~2017년)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는 제공 기간(2012년~2014년)에 비해 유의하게 작아졌으며, 그 영향은 Non-BIG4일수록 더 컸다. 특히,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 이전과 제공 종료 후

기간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대되었으나 제공 종료 후에는 다시 제공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았다.

나. 신외부감사법의 표준감사시간을 이용한 연구

다음으로 신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경용·정균범(2020), 이유선 외(2021), 이재은 외(2018), 김남현·이용규(2019) 등이 있다.

먼저, 김경용·정균범(2020)은 신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이 처음 적용된 2019년과 2018년의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을 비교하여 표준감사시간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감사품질의 향상 정도는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으로 감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향상된 정도는 분·반기 검토시간 비중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이유선 외(2021)는 표준감사시간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인의 총 감사투입시간과 핵심직급(품질관리검토자, 담당이사, 등록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직급에서 Big4의 감사시간 증가가 Non-Big4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당이사의 경우에는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Non-Big4의 경우 수습공인회계사의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력별 가중치가 높은 담당이사의 감사투입시간을 늘려 표준감사시간을 맞추려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실제감사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어느 직급에서 증가하였는가를 본 연구이다.

한편 이재은 외(2018)는 표준감사시간 자체의 도입 효과를 검증한 것은 아니고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이용된 감사인의 감사경험(감사숙련도)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사팀 구성 인력의 평균경력이 많으면 감사품질이 더 높을 것이라는 실무상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력차이 조정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며 감사팀의 평균경력차이의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실제 감사투입시간 자체의 증가가 감사품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재은 외(2018)는 표준감사시간을 직접 이용한 논문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에서 이용된 직급별 시간당 보수 비율을 사용한 숙련도 조정계수를 이용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표준감사시간 산정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이다.

반면에 김남현·이용규(2019)는 단순감사시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한 숙련도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구한 조정감사시간과 단순감사시간의 차이를 감사인의 경험이 반영된 'KICPA 감사숙련도'로 정의하고 이 변수가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KICPA 감사숙련도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사숙련도가 높을수록(즉, 감사인의 경험이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경력차이보다는 실제 감사투입 시간 자체가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이재은 외(2018)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기타 연구

주인기 외(2007)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시간을 분석하였고, 기업의 상장 여부, 초도감사 여부 그리고 개별기업의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업종별·기업규모별 준거감사시간을 산출하였다. 주인기 외(2007)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평균감사투입시간 이전에 오늘날의 표준감사시간과 유사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박종현 외(2021)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이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한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이익의 질이 향상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들었다. 즉, 박종현 외(2021)는 표준감사시간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포함한 여러 회계개혁 조치들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것이다. 특이한 점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였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은 제도가 도입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그동안 신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 도입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2018년)과 도입 후(2019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연도효과를 보는 것이며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외에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연도 비교를 한 것은 개별기업 수준에서 표준감사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별기업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실제감사시간과 비교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 도입의 연도효과가 아니라 개별기업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둘째, 어떤 특성이 개별기업의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쳐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평균감사투입시간이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효과를 알아보았다면,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어떤 항목에 유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가설의 설정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총자산과 매출액 등)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연결 여부, 자회사 수, 위험계정비중(기업의 복잡성, 자산총액 대비 [매출채권(금융업의 경우 대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금융지주사 여부, 비금융지주사 여부, 미국상장사 여부, 핵심감사제 적용 여부, 초도감사 여부, 반기검토 여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여부, 당기순손실 여부, 비적정의견 여부 등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표준감사시간 계산시 적용되는 요인과 추가적인 요인들이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 차이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본다.

먼저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절대적인 실제감사시간은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감사시간은 많이 투입될 수 있지만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가는 미지수다. 즉, 감사보수가 절대적으로는 많은 경우라도 정상적인 감사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감사보수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이므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초도감사의 경우에 많이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초도감사의 경우에 그룹별로 5%~20%를 가산하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많이 투입되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초도감사 여부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Big4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n-Big4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시간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절대적인 감사시간으로서 감사인의 경력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숙련도조정계수를 반영한 표준감사시간과는 다르다.⁵⁾ 따라서 Big4 회계법인이 non-Big4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속

5)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에서는 감사인의 경력별가중치를 고려한 숙련도조정계수를 이용하여 감사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별가중치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별표 3. 감사인지정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경력별가중치를 적용한다. 외감규정 별표 3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100시간을 투입하더라도 경력기간 2년 미만인 회계사는 80시간으로 산정되고 경력기간 15년 이상인 회계사는 120시간으로

런도조정계수를 반영한 감사시간의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 회계법인 규모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에 감사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감사인이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을 이익조정 등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이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4를 설정한다.

가설 4 : 기업의 경영성과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에 감사위험이 감소한다고 감사인이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무상태가 양호한 것을 분식회계 또는 이익조정 등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상태가 양호한 것이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5를 설정한다.

가설 5 : 기업의 재무상태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이 복잡할수록 감사위험이 증가한다고 감사인이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를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복잡성이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 6을 설정한다.

가설 6 : 기업의 복잡성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산정되어 1.5배 차이가 발생한다.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20	115	110	100	80

III. 연구모형과 표본선정

1. 표준감사시간의 측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9년 2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공표하였고, 실무에서 표준감사시간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SHOUR)을 측정하였다.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에 제시된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 산정순서에 따라 회사에 맞는 그룹 구분을 확인하고 규모·업종·가감요인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표준감사시간표와 가감요인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1>은 그룹별 구분 기준이다. 회사의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기업의 규모, 사업의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감사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11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 1> 그룹별 구분 기준

그룹구분	상장여부	기준 ⁶⁾
그룹 1	혼합	개별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규모 5조원 이상 모든 상장사와 일부 비상장사
그룹 2	상장	개별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그룹 3		개별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그룹 4		개별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그룹 5		개별자산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그룹 6		개별자산 5백억원 미만 상장사
그룹 7	혼합	코넥스 상장사 또는 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사
그룹 8	비상장	개별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그룹 9		개별자산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그룹 10		개별자산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그룹 11		개별자산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1)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2019.8.19.

<표 1>에 의하여 그룹을 구분한 뒤 그룹별로 제시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표와 가감요인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측정하였다. <표 2>와 <표 3>은 각각 그룹 1의 표준감사시간표와 가감요인의 예시이다. 표준감사시간표와 가감요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귀분석 추정식을 감사시간에 대한 식으로 변환한 후 적절한 값을 대입함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표

6) 개별 자산규모 및 연결 기업규모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로부터 회사의 기업규모 및 업종에 맞는 값을 산출한 후, 가감요인 중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가감률을 확인하여 모두 곱함으로써 최종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하였다.

〈표 2〉 표준감사시간표 (그룹 1)

(단위 : 시간)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5조	3,770	4,300	5,280	2,460	3,410	2,320
10조	5,110	5,820	7,150	3,330	4,620	3,150
20조	6,930	7,890	9,690	4,520	6,260	4,270
50조	10,360	11,790	14,480	6,750	9,360	6,380
100조	14,040	15,980	19,630	9,150	12,690	8,640
200조	19,030	21,660	26,600	12,400	17,200	11,720
300조	22,730	25,880	31,780	14,820	20,540	14,000

1)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2019.2.13.

〈표 3〉 표준감사시간 가감요인 (그룹 1)

1. 연결여부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0% 가산														
2.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수														
자회사수	3	10	25	45	100	200	380							
가산율	10%	25%	40%	60%	80%	100%	120%							
3. 위험계정비중 : 자산총액 대비 [매출채권(금융업의 경우 대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비중	30%		55%		80%									
가산율	5%		10%		15%									
4. 금융지주사 : 금융지주사인 경우 60% 차감														
5. 비금융지주사 : 비금융지주사인 경우 55% 차감														
6. 미국상장사(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그 종속회사) : 40% 가산														
7. KAM(핵심감사제) : KAM 적용 대상인 경우 10% 가산														
8. 초도감사 : 해당회사 또는 동일업종 감사경험 고려하여 5%~20% 가산														

1)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2019.2.13.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다음의 식 (1)을 설정하였다.⁷⁾

$$GAPR(G_DUM)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BIG4_t + \beta_4 ROA_t + \beta_5 LEV_t + \beta_6 INVREC_t + IND + YD + \varepsilon_t \quad (1)$$

여기서 ;

- $GAPR$ =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
 (= (표준감사시간($SHOUR$) - 실제감사시간($AHOUR$)) / 표준감사시간($SHOUR$)) ;
 G_DUM =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1, 아니면 0 ;
 $AUDITFEE$ =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FIRST$ = 초도감사이면 1, 아니면 0 ;
 $BIG4$ =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
 ROA =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
 LEV = 부채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INVREC$ = 기업의 복잡성 (= 재고자산 + 매출채권 / 총자산) ;
 IND = 산업더미 ;
 YD = 연도더미.

식 (1)에서 종속변수인 $GAPR$ 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연속변수)이고, G_DUM 은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가설 1의 관심변수는 $AUDITFEE$ 이다. 감사인이 감사보수($AUDITFEE$)를 많이 받으면 감사노력을 더 기울여 감사시간을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작게 될 것이고 $AUDITFEE$ 의 계수 β_1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감사보수가 절대적으로는 많은 경우라도 표준적인 감사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크게 될 것이고, $AUDITFEE$ 의 계수 β_1 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⁸⁾

가설 2의 관심변수는 $FIRST$ 이다. $FIRST$ 는 초도감사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작다면 $FIRST$ 의 계수 β_2 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초도감사의 경우에 많이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초도감사 때 그룹별로 5%~20%를 가산하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적게 투입된다면 $FIRST$ 의 계수 β_2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⁹⁾

7) 식 (1)은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YD)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산업더미(IND)와 연도더미(YD)를 모두 제외하거나 산업더미(IND)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유사하다.

8) 종속변수인 $GAPR$ 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표준감사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감사시간의 절댓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율변수이다.

9) 초도감사의 경우에 절대적인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초도감사여서 실제감사시간이 10%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준감사시간 계산시 20%가 가산되는 경우라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는 오히려 증가하

가설 3의 관심변수는 *BIG4*이다. *BIG4*는 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가설 3에 따라 감사인이 *BIG4*일 경우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작다면 *BIG4*의 계수 β_3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BIG4* 회계법인인 *non-BIG4*에 비해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기는 하지만 숙련도조정계수를 반영한 감사시간의 경우에 더 적게 투입된다면 *BIG4*의 계수 β_3 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¹⁰⁾

가설 4의 관심변수는 *ROA*이다. *ROA*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크다면 *ROA*의 계수 β_4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을 감사인이 이익조정 등의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므로 *ROA*의 계수 β_4 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5의 관심변수는 *LEV*이다. *LEV*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을수록(즉,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크다면 *LEV*의 계수 β_5 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을 분식회계 또는 이익조정 등의 요인 때문으로 감사인이 본다면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할 것이므로 *LEV*의 계수 β_5 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설 6의 관심변수는 *INVREC*이다. *INVREC*는 기업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측정치이다. 기업이 복잡하다면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이 복잡할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작다면 *INVREC*의 계수 β_6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감사인이 이를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복잡성이 실제감사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3. 표본선정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다. 재무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5에서 추출하였으며, 감사인에 대한 자료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서

게 된다.

- 10)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감사할 때 *BIG4* 회계법인은 경력기간 2년 미만인 회계사만 1,000시간을 투입하고, *non-BIG4*는 경력기간 15년 이상 회계사만 900시간을 투입하였다고 하자. 절대적인 감사시간 측면에서 보면 *BIG4*가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한 것이지만 표준감사시간을 고려할 때는 *BIG4*는 800시간($=1,000\text{시간} \times 0.8(\text{숙련도조정계수})$)을 투입한 것이 되고, *non-BIG4*는 1,080시간($=900\text{시간} \times 1.2(\text{숙련도조정계수})$)을 투입한 것이 되어 *non-BIG4*가 오히려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것이 된다.

직접 수집하였다. 표본 중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기업 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자본이 결측치이거나 음(-)의 값을 갖는 관측치와 분석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관측치 또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표본은 6,322개 기업-연도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크기를 감사인유형별, 상장시장별로 나누어 <표 4>에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연속변수는 이상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각 변수별로 표본의 상·하위 1%를 극단치 조정(winsorize)하였다.

<표 4>의 Panel A에서는 감사인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표본 분포를 제시하였다.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표본은 2,894개이고, non-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표본은 3,428개이다. <표 4>의 Panel B에서는 상장시장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표본 분포를 제시하였다. KOSDAQ 기업은 3,710개이고, KOSPI 기업은 2,612개이다.

<표 4> 연도별 표본 분포

Panel A. 감사인 유형별			
YEAR	BIG4	non-BIG4	Total
2015	632	621	1,253
2016	604	652	1,256
2017	589	709	1,298
2018	549	689	1,238
2019	520	757	1,277
Total	2,894	3,428	6,322
Panel B. 상장시장별			
YEAR	KOSDAQ	KOSPI	Total
2015	736	517	1,253
2016	736	520	1,256
2017	772	526	1,298
2018	715	523	1,238
2019	751	526	1,277
Total	3,710	2,612	6,322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 5>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이다. 실제감사시간(AHOUR)의 평균은 1706.65이며,

이는 표본 기업들의 평균 실제감사시간이 1706.65시간임을 의미한다. 표준감사시간(*SHOUR*)의 평균은 2225.89이며, 이는 표본기업들의 평균 표준감사시간이 2225.89시간임을 의미한다.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GAP*)가 519.24인 것은 평균적으로 표본 기업들이 표준감사시간 대비 519.24시간을 덜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의 평균값은 0.289이다. 이는 표본 기업들의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평균적으로 28.9% 미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감사시간 미달 여부(*G_DUM*)의 평균은 0.872이므로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한 기업이 87.2%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기술통계량

<i>Variable</i>	MEAN	STD	MIN	P25	P50	P75	MAX
<i>AHOUR</i>	1706.65	2707.32	169	760	1020	1622	67639
<i>SHOUR</i>	2225.89	2746.46	337.41	1310.35	1614.62	2058.61	51956.62
<i>GAP</i>	519.24	1312.04	-44048.03	283.01	538.76	788.82	22369.13
<i>GAPR</i>	0.289	0.268	-0.748	0.173	0.350	0.469	0.696
<i>G_DUM</i>	0.872	0.334	0	1	1	1	1
<i>AUDITFEE</i>	11.363	0.732	10.127	10.878	11.225	11.695	13.929
<i>FIRST</i>	0.202	0.401	0	0	0	0	1
<i>BIG4</i>	0.458	0.498	0	0	0	1	1
<i>ROA</i>	0.013	0.098	-0.389	-0.013	0.024	0.061	0.273
<i>LEV</i>	0.418	0.201	0.054	0.253	0.416	0.573	0.871
<i>INVREC</i>	0.271	0.145	0.016	0.163	0.257	0.362	0.678
<i>GRW</i>	0.084	0.327	-0.577	-0.060	0.036	0.150	1.942
<i>FOR</i>	7.026	10.342	0	1.060	2.712	8.056	53.536
<i>CFO</i>	0.042	0.080	-0.222	0.001	0.045	0.087	0.242
<i>OWN</i>	40.049	17.174	6.95	26.72	39.19	51.46	82.94
<i>TENURE</i>	5.292	3.994	1	2	4	8	18
N	6,322						

- 1) 변수의 정의 : *AHOUR*=실제감사시간 ; *SHOUR*=표준감사시간 ; *GAP*=표준감사시간-실제감사시간 ; *GAPR*=(표준감사시간-실제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 ; *G_DUM*=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1, 아니면 0 ; *AUDITFEE*=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값 ; *FIRST*=초도감사이면 1, 아니면 0 ; *BIG4*=감사인이 BIG4면 1, 아니면 0 ; *ROA*=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LEV*=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INVREC*=기업의 복잡성[(=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 *GRW*=매출액성장률(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 *FOR*=외국인지분율(%) ; *CFO*=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OWN*=대주주지분율(%) ; *TENURE*=연속감사기간.

<표 6>은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술통계이다. 실제감사시간(AHOUR)의 평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455.6, 1534.7, 1607.7, 1801.8, 2130.5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GAP)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던 추세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이 2019년이지만, 한해 연도 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시사한다.

〈표 6〉 연도별 기술통계량

Variable	2015		2016		2017		2018		2019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AHOUR	1455.6	2145.0	1534.7	2268.3	1607.7	2429.9	1801.8	2700.1	2130.5	3657.3
SHOUR	2045.5	2650.5	2127.5	2718.0	2220.5	2761.4	2346.1	3006.8	2388.7	2571.0
GAP	589.9	1080.8	592.8	1124.7	612.8	1099.2	544.3	1166.2	258.2	1871.6
GAPR	0.305	0.262	0.310	0.251	0.318	0.254	0.282	0.273	0.229	0.288
G_DUM	0.891	0.312	0.894	0.308	0.894	0.307	0.867	0.340	0.815	0.388
N	1,253		1,256		1,298		1,238		1,277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상관관계분석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과 감사보수(AUDITFEE), 초도감사 여부(FIRST), BIG4 여부(BIG4), 부채비율(LEV), 매출액성장률(GRW), 외국인지분율(FOR), 영업현금흐름(CFO), 대주주지분율(OWN)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과 기업의 복잡성(INVREC)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 충족 여부(G_DUM)와 감사보수(AUDITFEE), 초도감사 여부(FIRST), BIG4 여부(BIG4), 부채비율(LEV), 자산성장률(GRW), 외국인지분율(FOR), 영업현금흐름(CFO), 대주주지분율(OWN)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GAPR)와 기업의 복잡성(INVREC)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단일변량 분석이므로 더 정확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상관관계분석(N=6,322)

Variable	AHOUR	SHOUR	GAP	GAPR	G_DUM	AUDITFEE	FIRST	BIG4	ROA	LEV	INVREC	GRW	FOR	CFO	OWN	TENURE
AHOUR	1.00	0.88***	-0.21***	-0.40***	-0.33***	0.67***	-0.01	0.32***	0.05***	0.17***	-0.10***	-0.03***	0.41***	0.08***	0.02***	0.11***
SHOUR		1.00	0.27***	-0.15***	-0.13***	0.62***	-0.02*	0.26***	0.05***	0.18***	-0.11***	-0.04***	0.43***	0.08***	0.02***	0.11***
GAP			1.00	0.51***	0.42***	-0.07***	-0.04***	-0.12***	0.02***	0.01	0.00	-0.01	0.05***	0.00	0.00	0.01
GAPR				1.00	0.77***	-0.49***	-0.09***	-0.53***	-0.02***	-0.15***	0.07***	-0.02*	-0.15***	-0.05***	-0.05***	0.02
G_DUM					1.00	-0.38***	-0.08***	-0.35***	0.00***	-0.13***	0.06***	-0.02*	-0.10***	-0.02*	-0.02*	0.02
AUDITFEE						1.00	0.03**	0.45***	0.05***	0.29***	-0.08***	-0.03**	0.40***	0.10***	0.04***	0.07***
FIRST							1.00	-0.09***	-0.05***	0.10***	-0.01	0.07***	-0.09***	-0.07***	-0.05***	-0.54***
BIG4								1.00	0.13***	0.08***	-0.05***	-0.03**	0.26***	0.14***	0.21***	0.17***
ROA									1.00	-0.27***	0.01	0.16***	0.23***	0.55***	0.26***	0.04***
LEV										1.00	0.17***	0.04***	-0.13***	-0.15***	-0.04***	-0.07***
INVREC											1.00	0.00	-0.10***	-0.09***	0.00	0.02*
GRW												1.00	-0.01	0.04***	-0.05***	-0.05***
FOR													1.00	0.23***	-0.01***	0.15***
CFO														1.00	0.20***	0.06***
OWN															1.00	0.03***
TENURE																1.00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의미함

3. 실증분석결과

<표 8>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Model(1)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증가시키는 요인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

먼저, *AUDITFEE*의 계수값은 -0.099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22.33$). 이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가설 1). 둘째, *FIRST*의 계수값은 -0.074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11.01$). 이는 초도감사기업이면 실제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가설 2). 셋째, *BIG4*의 계수값은 -0.226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36.56$). 이는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이면 실제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가설 3). 넷째, *ROA*의 계수값은 0.097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3.35$). 이는 기업의 경영성파가 양호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덜 투입함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가설 4). 다섯째, *LEV*의 계수값은 -0.040으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2.66$).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부채비율이 높으면)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가설 5). 마지막으로 *INVREC*의 계수는 0.057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text{-stat}=2.83$). 이는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감사인이 이를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여 오히려 실제감사시간을 덜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가설 6).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종속변수로 연속변수인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설 1부터 가설 6이 모두 성립함을 의미한다.¹¹⁾

Model(2)는 표준감사시간 충족 여부(*G_DUM*)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로짓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AUDITFEE*의 계수값은 -0.777($\text{wald chi}^2=163.42$), *FIRST*의 계수값은 -0.963($\text{wald chi}^2=84.54$), *BIG4*의 계수값은 -2.533($\text{wald chi}^2=317.70$)으로 1% 수준에서, *LEV*의 계수값은 -0.603($\text{wald chi}^2=5.77$)으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이고, *ROA*의 계수값은 1.614($\text{wald chi}^2=9.61$)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INVREC*의 계수값은 0.521으로서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11) OLS(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자승법)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VIF(분산팽창요인) 값이 제시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VIF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이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모든 OLS에서 VIF값이 2를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가 좋지 않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덜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종속변수를 질적 변수인 표준감사시간 충족 여부(G_DUM)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설 1부터 가설 5가 모두 성립함을 의미한다.

〈표 8〉 가설 검증 결과

$GAPR(G_DUM)_i = \beta_0 + \beta_1 AUDITFEE_i + \beta_2 FIRST_i + \beta_3 BIG4_i + \beta_4 ROA_i + \beta_5 LEV_i + \beta_6 INVREC_i + IND + YD + \varepsilon_i$		
Variable	Model(1) 연속변수 : $GAPR$	Model(2) 더미변수 : G_DUM
Intercept	1.489 (29.81 ^{***})	12.416 (311.65 ^{***})
AUDITFEE	-0.099 (-22.33 ^{***})	-0.777 (163.42 ^{***})
FIRST	-0.074 (-11.01 ^{***})	-0.963 (84.54 ^{***})
BIG4	-0.226 (-36.56 ^{***})	-2.533 (317.70 ^{***})
ROA	0.097 (3.35 ^{***})	1.614 (9.61 ^{***})
LEV	-0.040 (-2.66 ^{***})	-0.603 (5.77 ^{**})
INVREC	0.057 (2.83 ^{***})	0.521 (2.27)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Adj R ² (Pseudo R ²)	0.3816	0.2798
F-value(Wald Chi ²)	178.27 ^{***}	795.84 ^{***}
N	6,322	6,322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Model(1)은 OLS를 이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Model(2)는 Logit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chi² 통계량임

4) * : p<0.1, ** : p<0.05, *** : p<0.01

<표 9>에서는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더욱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Model(1)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OLS분석한 결과이고, Model(2)는 표준감사시간 충족 여부(*G_DUM*)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Model(1)에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과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AUDITFEE*의 계수값은 $-0.111(t\text{-stat}=-23.25)$, *FIRST*의 계수값은 $-0.046(t\text{-stat}=-5.87)$, *BIG4*의 계수값은 $-0.237(t\text{-stat}=-37.49)$, *GRW*의 계수값은 $-0.034(t\text{-stat}=-4.11)$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매출액성장률이 높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INVREC*의 계수값은 $0.060(t\text{-stat}=3.02)$, *FOR*의 계수값은 $0.002(t\text{-stat}=5.55)$, *OWN*의 계수값은 $0.000(t\text{-stat}=2.85)$, *TENURE*의 계수값은 $0.004(t\text{-stat}=5.36)$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연속감사기간이 길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Model(2)에서 표준감사시간 충족 여부(*G_DUM*)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AUDITFEE*의 계수값은 $-0.995(t\text{-stat}=172.77)$, *FIRST*의 계수값은 $-0.712(t\text{-stat}=31.46)$, *BIG4*의 계수값은 $-2.632(t\text{-stat}=327.06)$, *GRW*의 계수값은 $-0.484(t\text{-stat}=12.09)$ 로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매출액성장률이 높을수록 표준감사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표준감사시간 충족여부(*G_DUM*)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ROA*의 계수값은 $1.014(t\text{-stat}=2.75)$, *FOR*의 계수값은 $0.023(t\text{-stat}=21.53)$, *OWN*의 계수값은 $0.009(t\text{-stat}=9.23)$, *TENURE*의 계수값은 $0.029(t\text{-stat}=5.36)$ 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연속감사기간이 길수록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9〉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

$$GAPR(G_DUM)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BIG4_t + \beta_4 ROA_t + \beta_5 LEV_t + \beta_6 INVREC_t + \beta_7 GRW_t + \beta_8 FOR4_t + \beta_9 CFO_t + \beta_{10} OWN_t + \beta_{11} TENURE_t + IND + YD + \varepsilon_t$$

Variable	Model(1) 연속변수 : GAPR	Model(2) 더미변수 : G_DUM
Intercept	1.563 (29.24 ^{***})	14.178 (281.99 ^{***})
AUDITFEE	-0.111 (-23.25 ^{***})	-0.995 (172.77 ^{***})
FIRST	-0.046 (-5.87 ^{***})	-0.712 (31.46 ^{***})
BIG4	-0.237 (-37.49 ^{***})	-2.632 (327.06 ^{***})
ROA	0.054 (1.53)	1.014 (2.75 [*])
LEV	-0.013 (-0.85)	-0.194 (0.54)
INVREC	0.060 (3.02 ^{***})	0.569 (2.64)
GRW	-0.034 (-4.11 ^{***})	-0.484 (12.09 ^{***})
FOR	0.002 (5.55 ^{***})	0.023 (21.53 ^{***})
CFO	0.057 (1.40)	0.464 (0.44)
OWN	0.000 (2.85 ^{***})	0.009 (9.23 ^{***})
TENURE	0.004 (5.36 ^{***})	0.029 (5.36 ^{**})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Adj R ² (Pseudo R ²)	0.3902	0.2883
F-value(Wald Chi ²)	150.80 ^{***}	811.84 ^{***}
N	6,322	6,322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Model(1)은 OLS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Model(2)는 Logit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chi² 통계량임

4) * : p<0.1, ** : p<0.05, *** : p<0.01

4. 추가분석결과

추가분석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네 가지의 추가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 연도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 연도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과 초과기업을 구분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재검증한다. 또한, 감사인 유형별로, 상장시장별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른지 추가분석을 수행한다.

가. 연도별 분석

<표 10>은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 연도와 도입 후 연도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표 10> 연도별 분석결과

$GAPR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BIG4_t + \beta_4 ROA_t + \beta_5 LEV_t + \beta_6 INVREC_t + IND + \varepsilon_t$					
Variable	Model(1) 2015	Model(2) 2016	Model(3) 2017	Model(4) 2018	Model(5) 2019
Intercept	1.057 (9.42 ^{***})	1.165 (10.89 ^{***})	1.465 (14.22 ^{***})	1.647 (15.05 ^{***})	2.285 (20.83 ^{***})
AUDITFEE	-0.057 (-5.51 ^{***})	-0.064 (-6.54 ^{***})	-0.090 (-9.53 ^{***})	-0.110 (-10.97 ^{***})	-0.168 (-17.02 ^{***})
FIRST	-0.140 (-8.39 ^{***})	-0.040 (-2.5 ^{**})	-0.035 (-2.61 ^{***})	-0.105 (-6.81 ^{***})	-0.059 (-4.28 ^{***})
BIG4	-0.210 (-15.04 ^{***})	-0.223 (-16.96 ^{***})	-0.231 (-17.89 ^{***})	-0.226 (-16.11 ^{***})	-0.218 (-14.53 ^{***})
ROA	-0.044 (-0.6)	0.058 (0.9)	0.184 (3.15 ^{***})	0.124 (1.88 [*])	0.114 (1.89 [*])
LEV	-0.037 (-0.99)	-0.104 (-3.07 ^{***})	-0.037 (-1.16)	-0.050 (-1.46)	0.006 (0.18)
INVREC	0.086 (1.81 [*])	0.091 (2.06 ^{**})	0.016 (0.37)	0.068 (1.54)	0.037 (0.86)
IN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 ²	0.2738	0.3134	0.3594	0.4283	0.5240
F-value	27.23 ^{***}	32.83 ^{***}	41.43 ^{***}	52.48 ^{***}	79.05 ^{***}
N	1,253	1,256	1,298	1,238	1,277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OLS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 : $p < 0.1$, ** : $p < 0.05$, *** : $p < 0.01$

먼저, 종속변수가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인 경우에 *AUDITFEE*, *FIRST*, *BIG4*는 모든 연도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은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측정치인 *LEV*는 2016년에만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에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인 경우에 *INVREC*는 2015년과 2016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2017년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ROA*는 2017년 이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2015년과 2016년에는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2017년 이후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감사인은 이를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시간을 덜 투입함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나.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과 초과기업으로 구분한 결과

<표 11>은 표본을 표준감사시간 초과기업과 미달기업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이다.

<표 11> 표준감사시간 초과/미달 기업별 분석결과

$GAPR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BIG4_t + \beta_4 ROA_t + \beta_5 LEV_t + \beta_6 INVREC_t + IND + YD + \varepsilon_t$		
Variable	Model(1) 표준감사시간 초과기업	Model(2)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
<i>Intercept</i>	0.389 (3.27 ^{***})	0.875 (23.30 ^{***})
<i>AUDITFEE</i>	-0.050 (-5.09 ^{***})	-0.041 (-12.27 ^{***})
<i>FIRST</i>	-0.087 (-4.96 ^{***})	-0.025 (-5.19 ^{***})
<i>BIG4</i>	-0.028 (-0.99)	-0.150 (-35.09 ^{***})
<i>ROA</i>	0.085 (1.07)	0.033 (1.62)
<i>LEV</i>	-0.007 (-0.15)	-0.018 (-1.72 [*])
<i>INVREC</i>	0.089 (1.36)	0.017 (1.23)
<i>IND</i>	Included	Included
<i>YD</i>	Included	Included

〈표 11〉 표준감사시간 초과/미달 기업별 분석결과 (계속)

Variable	Model(1) 표준감사시간 초과기업	Model(2)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
Adj R ²	0.0655	0.2997
F-value	3.57***	108.23***
N	808	5,514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OLS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 : $p < 0.1$, ** : $p < 0.05$, *** : $p < 0.01$

Model(1)은 표준감사시간 초과기업을 대상으로, Model(2)는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표준감사시간 초과기업에서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 기업일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에서는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의 결과는 <표 8>의 결과가 주로 표준감사시간 미달기업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시사한다.

다. 감사인 유형별

<표 12>는 감사인 유형별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보았다. Model(1)에서는 BIG4 표본을 대상으로, Model(2)에서는 non-BIG4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AUDITFEE와 FIRST는 BIG4와 non-BIG4 표본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ROA는 BIG4 표본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LEV는 BIG4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BIG4 회계법인인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감사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시간을 덜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하고, 기업의 재무성과에 따라 재무성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시간을 더 투입하여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BIG4 감사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성과를 고려하여 실제감사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NVREC는 non-BIG4 표본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non-BIG4 감사인은 기업의 복잡성이 높아도 이를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지 않고, 적은 실제감사시간을 투입하므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 12>의 결과는 <표 8>의 결과가 주로 non-BIG4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기업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시사한다.

〈표 12〉 감사인 유형별 분석결과

$GAPR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ROA_t + \beta_4 LEV_t + \beta_5 INVREC_t + IND + YD + \varepsilon_t$		
Variable	Model(1) BIG4	Model(2) non-BIG4
Intercept	1.220 (15.57 ^{***})	1.431 (20.64 ^{***})
AUDITFEE	-0.097 (-14.91 ^{***})	-0.093 (-14.85 ^{***})
FIRST	-0.132 (-10.14 ^{***})	-0.043 (-6.61 ^{***})
ROA	0.257 (4.06 ^{***})	0.027 (1.02)
LEV	-0.074 (-2.65 ^{***})	-0.009 (-0.61)
INVREC	0.012 (0.33)	0.086 (4.42 ^{***})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Adj R ²	0.1835	0.1272
F-value	31.96 ^{***}	24.78 ^{***}
N	2,894	3,428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OLS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 : $p < 0.1$, ** : $p < 0.05$, *** : $p < 0.01$

라. 상장시장별

<표 13>은 상장시장별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Model(1)에서는 KOSDAQ 표본을 대상으로, Model(2)에서는 KOSPI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KOSDAQ, KOSPI 표본 모두에서 AUDITFEE, FIRST, BIG4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고, ROA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일수록, 감사인이 BIG4일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

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하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할수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감사시간을 덜 투입함으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LEV*는 KOSPI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KOSPI에 상장된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실제감사시간이 더 많이 투입되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또한, *INVREC*는 KOSDAQ 표본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을, KOSPI 표본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KOSPI 상장기업은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어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GAPR*)을 감소시키지만, KOSDAQ 표본의 기업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표 13〉 상장시장별 분석결과

$GAPR_t = \beta_0 + \beta_1 AUDITFEE_t + \beta_2 FIRST_t + \beta_3 BIG4_t + \beta_4 ROA_t + \beta_5 LEV_t + \beta_6 INVREC_t + IND + YD + \varepsilon_t$		
Variable	Model(1) KOSDAQ	Model(2) KOSPI
Intercept	1.575 (18.97 ^{***})	1.699 (22.68 ^{***})
AUDITFEE	-0.107 (-14.34 ^{***})	-0.115 (-17.81 ^{***})
FIRST	-0.072 (-9.05 ^{***})	-0.067 (-5.74 ^{***})
BIG4	-0.242 (-32.09 ^{***})	-0.209 (-19.76 ^{***})
ROA	0.066 (2.13 ^{**})	0.137 (2.10 ^{**})
LEV	-0.025 (-1.35)	-0.069 (-2.64 ^{***})
INVREC	0.117 (5.00 ^{***})	-0.073 (-2.03 ^{**})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Adj R ²	0.357	0.3958
F-value	94.62 ^{***}	78.74 ^{***}
N	3,710	2,612

1) 변수의 정의는 <표 5>를 참조

2) OLS를 사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수치는 t 통계량임

3) * : $p < 0.1$, ** : $p < 0.05$, *** : $p < 0.01$

V. 결 론

신외부감사법에서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외부감사법에 도입된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기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6,322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초도감사기업인 경우, BIG4 감사인의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수가 많거나 초도감사이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에는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부터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였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와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감사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기업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를 포함하거나 연도별·감사인 유형별·상장시장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앞서의 연구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전부터 초도감사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초도감사일 때 그룹별로 5%~20%를 가산하는 현행 표준감사시간제도가 타당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경우에는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당기순손실인 경우 5%~30%를 가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업이 복잡할수록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재의 표준감사시간 결정시 위험계정비중에 따라 2%~30%를 가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므로 향후 실제감사시간에 대한 점검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감사보수가 많거나 BIG4 감사인의 경우 또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실제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감사보수와 BIG4 감사인 여부 또는 재무상태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표준감사시간 도입 전(2018년)과 도입 후(2019년)를 비교하여 연도효과를 알아본 반면에 본 연구는 개별 기업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실제감사시간과 비교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 도입의 연도효

과가 아니라 개별기업 수준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과 실제감사시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을 개정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개별기업별 표준감사시간은 연구자들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추정한 표준감사시간이지만 개별기업별로 완전히 정확한 표준감사시간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사보수, 초도감사 여부, 감사인 규모, 경영성과, 재무상태, 기업의 복잡성을 중심으로 보고 기타 변수(성장성, 외국인지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대주주지분율, 연속감사기간 등)를 고려하였으나 이외에도 생략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이 2019년부터 도입되었으므로 표준감사시간 도입 후의 기간은 2019년만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용·정균범. 2020. “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학회 추계발표논문.
- 김남현·이용규. 2019.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0권 제4호 : 31-47.
- 박종성·곽승욱. 2018.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효과 분석”. 회계와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 123-149.
- 박종성·조은주.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에 미친 영향 분석”. 회계세무와감사연구 제58권 제3호 : 173-209.
- 박종현·김성환·이현경. 2021. “신외감법 도입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회계와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 105-127.
- 신현걸·정수진. 2017.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한 평균감사투입시간이 실제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 193-223.
- 이민우·정기위. 2020. “감사환경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과 감사품질 개선 효과 : 감사시장의 경쟁강도와 비감사보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9권 제3호 : 27-71.
- 이유선·노기팔·박경호. 2021.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4권 제2호 : 307-324.
- 이재은·배길수·최승욱. 2018. “감사숙련도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 : 표준감사시간에서 직급별 시간당 보수 비율을 사용한 숙련도 조정 방안 검토”. 회계저널 제27권 제1호 : 39-76.
- 정도진·강평경·박재형. 2020. “표준감사시간과 시행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상장협연구 2020-6.
- 주인기·최 관·권수영·이영한. 2007. “외부감사 실무를 위한 산업별-기업규모별 준거감사시간의 산정-Big 4 회계법인의 상장기업 감사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 35-63.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2019.2.13.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상세지침」. 2019.8.19.

The Determinants of the Difference between Standard Audit Hours and Actual Audit Hours

Min-hee Kim^{*} · Jung Hee Lee^{**} · Yeonjoo Cho^{***} · Kyu An Jeon^{****}

〈Abstract〉

The Ne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llows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KICPA) to set standard audit hours to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protect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audit hours and the actual audit hours(“the difference” hereafter). 6,322 company-year data from 2015 to 2019 of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maller the difference was in the case of higher audit fee, the first audit, the Big 4 auditors, and poor financial condi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was larger whe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good and the complexity is higher. Third, when other variables affecting audit hours were included, then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in additional analyses, indicating that the study results are robust.

The result that a large amount of actual audit hours is invested in the case of high audit fees, initial audits, Big 4 auditors, or poor financial status suggests that the standard audit hours needs to be set differently accordingly. The result that less audit hours is used as management performance is good suggests that the current standard audit hours system, which is added in case of net loss,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more complex the company, the more audit hours should be inputted, but in reality,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when checking the actual audit hour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at the level of individual companies by estimating the standard audit hours for each company and comparing it with the actual audit hours.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ifference, it gives implications for factors to be aware of when revising the standard audit hours, and provides information to companies, auditors, and supervisors who are interested in the standard audit hours.

〈Key words〉 Standard Audit Hours, Actual Audit Hours,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udit Fee

*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minhee_@naver.com, First Author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junlee@deloitte.com, Co-author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swcpa@kicpa.kr,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ajeon@ssu.ac.kr, Corresponding Author